

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9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는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 및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,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재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(안 제3조제1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식품위생법」
- 2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2) 입법예고('20. 7. 23.~8. 12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82조 및 제83조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<u>법 제82조·제83조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</p> <p>1. <u>법 제82조 및 제83조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식품정책과 김하랑 (02-2133-4704)